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민일보 오피니언

필자는 오늘부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집무를 시작한다. 시민들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먼저 명칭이 바뀐다. 당장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청으로 현판을 바꿔 단다.

그 많은 공공기관의 명칭이 바뀌고 교통표지판까지 바뀐다. 줄잡아 2400개 정도가 이미 교체됐다. 행정전산망에서도 오류가 없도록 미리 꼼꼼히 준비해서 지금 정상작동 중이다.

그럼 명칭만 바뀌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뭐가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두고두고 해야 할 숙제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뀐 지 17년이 됐지만 아직도 제주도 사람 절반 정도는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른다고 한다. 우리는 그럼 안 된다.

강원도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추억을 선물했다. 학창시절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온 분도 있고, 강촌에 MT를 온 분도 있고, 화천 이기자부대나 양구 21사단에서 군 생활을 한 분도 있고, 강릉 정동진에서 해돋이를 보신 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그 아름다운 추억의 이면에는 강원도민들의 눈물과 한숨이 있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한강의 기적의 뒤안길에 강원도가 있었다.

줄지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소양강댐이 없었다면, 만든 전기 대부분을 수도권으로 보낸 동해안 화력발전소가 없었다면,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탄광 사고로 40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강원도 광부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한강의 기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강원도가 지금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횡성 둔내면 두원2리 마을에서 28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한다. 인구소멸은 이제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이래선 안 되겠다고, 우리도 한번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강원도 사람들이 떨치고 일어난 것이 바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다.

특별 자치시대가 이제 진짜 열렸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고 자동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잘살게 되는 법은 세상에 없다. 오히려 못살 수도 있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른 책임까지 지게 된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영어표기를 'Gangwon State(강원 스테이트)'라고 정해 미국의 주처럼 고도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확보한 권한을 발판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갈 것이다. 며칠 전 공식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강원도에서도 첨단미래산업을 키워야 한다. 반도체, 바이오 헬스, e모빌리티, 수소산업이다. 관광도 산업화하고 농업도 산업화해야 한다. 그렇게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우리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데 41년 걸렸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철원의 농업진흥지역, 소위 절대농지 면적은 철원군 농지의 105%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강원도 땅의 82%가 산림인데, 산림규제 면적은 강원도 땅의 90%다. 이러니 축사 하나, 농막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었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임자, 해봤어?"로 유명한 우리 강원도가 낳은 왕회장,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잘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렇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다.

강원도는 더 이상 수도권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땅이 아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부터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동안 강원도는 대한민국을 위해 '양보'했지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위해 '발전'할 것이다.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민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고독사 위험군' 세계 주요국 중 가계 빚이 GDP보다 많은 유일한 나라



동아일보 오피니언

2년 가까이 이어진 통화긴축 기조에도 한국의 가계 빚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 빚이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계 수위에 다다른 가계 빚이 금융과 경제 전반에 연쇄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주요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는데도 여전히 1위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팬데믹 기간 자영업 위기와 ‘빚투’ 열풍이 겹쳐 전례 없이 불어난 가계부채를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5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빚은 경기 침체, 고물가 등과 맞물려 대출 부실과 취약 가구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미 1분기에 벌어들인 것 이상을 쓴 적자가구는 27%나 된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연체율도 3월 말 평균 5%를 넘어섰다. 저신용·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층부터 부채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1%대 초반으로 잇달아 낮춘 가운데 위험 수위로 불어난 가계 빚이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는데, 임계치를 한참이나 벗어났다. 여기에다 최근 대출 금리 하락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주춤하던 가계 빚이 다시 늘어날 조짐이어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 빚에 대한 경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채 통계엔 잡히지 않지만 우리 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전세보증금이나 사실상 가계 빚이나 다름없는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하면 부채 쓰나미가 한꺼번에 몰려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9월이면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해준 조치도 끝나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와 금융권은 부채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편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를 집중 관리해 부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출처:동아일보 오피니언

보건복지부

증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 증증질환(골수섬유증)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 경감 -
- 난임 진단검사 사용 약제 보험 급여 확대 및 조제용 만성 변비치료제 약가 현실화 등 시행 -
-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 원가 보상하여 원활한 공급 도모 -

□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증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필수 약제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하고,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증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Guselkumab 주사제'의 선행치료제 범위에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해당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
- 골수섬유증에서 발생하는 비장비대 및 증상 관련 치료제인 '인레빅'이 신약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 또한, 노인, 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나, 최근 수급이 불안정했던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 등 3개사, 3품목)의 경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보험약가를 인상하였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 중 7개 품목에 대한 생산원가 보전도 추진하였다.

□ 이번 증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의 적정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

-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기존 '수용성' 제제에 비해 '지용성' 제제의 특성으로 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검토된 약제(품명: 리피오돌 울트라액, 기존에 주로 간 조영제로 사용)를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증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고가(158만 원/바이알, 생물학적제제)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럼피어프리필드시린지)'의 경우, 선행 치료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야 보험급여를 적용하는데,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사용하는 치료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를 선행치료제 범위에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동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
 - * 손·발바닥 농포증 : 건선 중에서도 희귀한 형태로 손과 발에만 노란색 고름이 가득한 농포가 발생하는 질환

□ 신약 건강보험 적용

- 골수섬유증* 치료제(성분명: 페드라티닙)의 건강보험 적용도 시작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로,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증상의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 * 비정상적 세포집단에 의해 골수 조직이 섬유질로 채워져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는 희귀 혈액암
- 이번 신약은 증증 질환인 골수섬유증 환자에게 1차 약제 치료 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의 기회를 높여, 기대여명을 연장하고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290만 원* 까지 절감한다.
 - * 본인 부담 5% 적용 시

□ 건강보험 약가 조정

- 노인, 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 등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를 6월 1일부터 인상한다.
 - 해당 약제는 원료 공급처 변경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최근 수급이 불안정한 바 있다. 해당 약제가 만성질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향후 1년간('23.6.~'24.5)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6억 정)을 고려하여 최소 6억 3백만 정 이상을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 또한, 퇴장방지의약품* 7개 품목에 대한 생산 원가 보전도 진행된다.
 - *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
 -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는 1년에 2회(4월, 10월) 원가 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약사는 원료비·재료비·노무비 등을 근거로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회계법인 검토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약가를 조정(인상)하고 있다.
 - 이번에 원가 보전을 수용한 약제는 농약 중독 시 해독제*, 국소 마취제**,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 * 파무에이주500밀리그램
- ** 제일리도카인주사액
- *** 맥클주(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
- 특히, ‘파무에이주’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독제가 없어, 원가 보전을 통해 해당 약제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독제 공급량을 늘려 농사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법제처

6월부터는 만 나이로 셅니다!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 6월 28일 시행 -
-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에 총 1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만 나이' 사용)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함(「민법」, 「행정기본법」 개정, 6. 28. 시행).

-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을 야기하였음.
-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함.
-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함.

□ (해수욕장 무단 방치 물건 제거)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등 이용객에게 미관상, 안전상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영용품 등이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되는 경우 강제로 제거할 수 있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6. 28. 시행).

- 다만, 설치되거나 방치된 물건이 해수욕장의 이용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 대집행의 절차를 따르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목적을 달성하기에 곤란한 경우로 제한됨.

□ (위험 수입식품 국내 반입차단) 소비자가 인체에 위험한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보조제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 구매대행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중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국내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6. 11. 시행).

- 국내반입차단 대상 원료 · 성분으로 지정된 것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낫다고 확인된 경우 지정이 해제되며,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

□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 제도 보완 등) 허위 · 부실한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자가 의뢰자에게 사진을 포함한 점검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자동차관리법」 개정, 6. 11. 시행).

-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을 하는 자는 의뢰한 자에게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여 성능 · 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거짓으로 점검을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업장 폐쇄 혹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더불어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혹은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는 수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투명한 방음벽에 야생조류가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방음벽, 건축물, 수로 등 인공구조물은 야생동물의 충돌, 추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치되어야 함(「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6. 11. 시행).

-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피해가 심각한 경우 충돌방지제품을 사용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인공구조물 관리 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고,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음.

□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로 1:1 맞춤 교육시대 연다

-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을 위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발표 -
-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 -
- 담당 교원 연수, 맞춤형 교수·학습방법 개발 등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추진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8일(목), 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 AI 디지털교과서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데이터 기반의 '맞춤'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장애교원을 위한 화면해설과 자막 기능,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도 지원한다.
-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 경험을 보유한 발행사와 신기술을 보유한 에듀테크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심사에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는 6개월간 안정성, 신뢰성,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과목 교사 연수, 맞춤형 교수·학습방법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 한편,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사 및 에듀테크 기업은 개발 시 유해콘텐츠 차단 등 윤리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디지털 소양 교육을 포함하여 정보 평가, 정보통신윤리, 과몰입 예방 등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사용자 의견수렴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학생은 학습 수준·속도에 맞는 배움으로 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부모는 풍부한 학습정보를 바탕으로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사는 학생의 인간적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교실은 학생 참여 중심의 맞춤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습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함께 소통하여 만들고 활용할 때,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된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인간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는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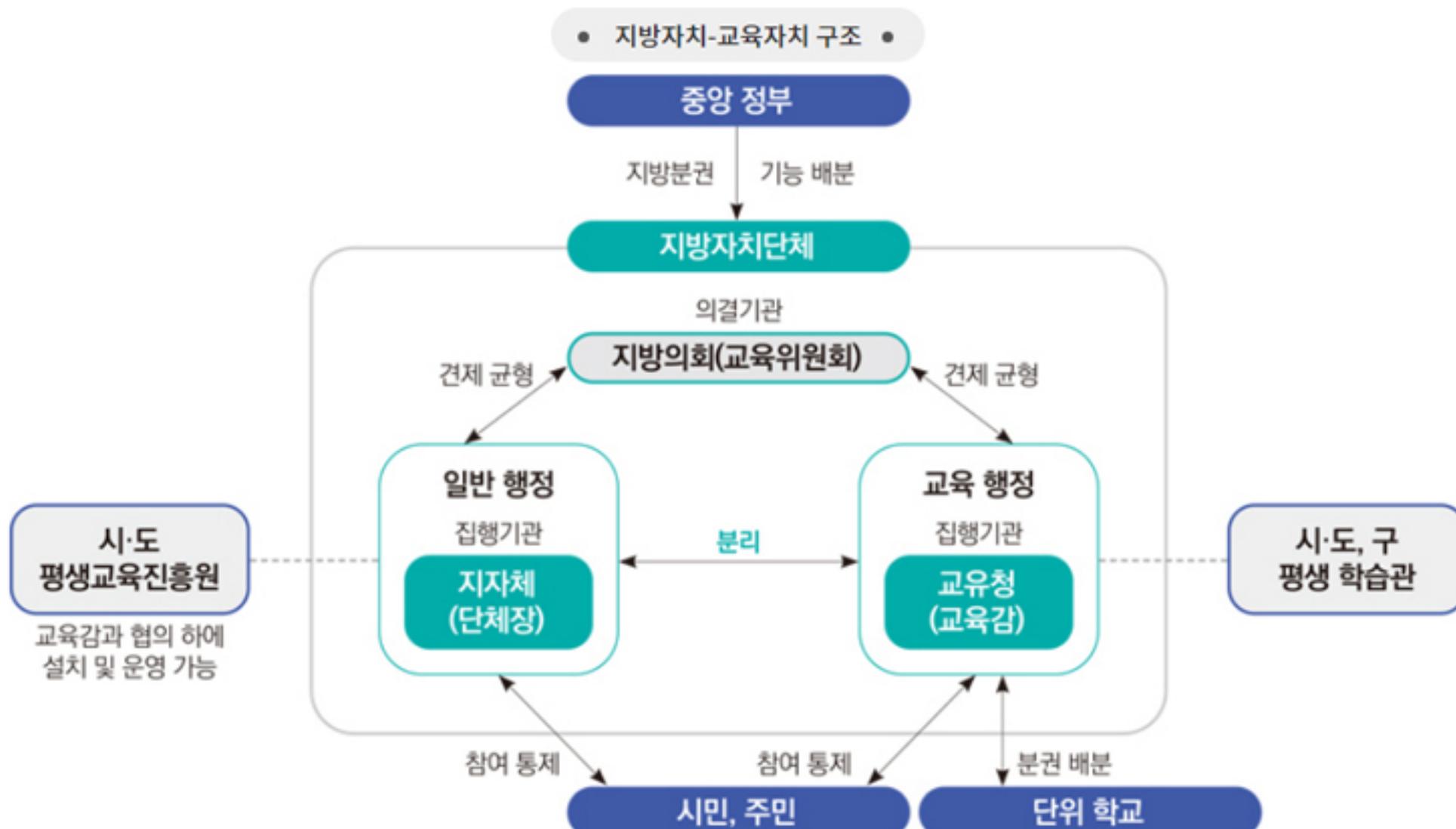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 방안 모색

 김 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1. 지방자치-교육자치 제도 연계 강화 방안 모색의 필요성

한국 지방교육행정 체제의 구조적 복잡성

- 현재의 지방교육행정체제는 중앙 정부와 교육청 간 수직적 체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적용 원리로 하는 지역차원에서의 자치,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 원리에 근거하는 기능적
- 지방교육 행정체제는 의결 기관의 통합적 구조와 집행 기관의 분리로 규정할 수 있음
 - 집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분리된 지방교육행정 체제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움(이기우, 2011)



* 자료: 금창호·유은정(2010:25), 윤서연·윤혜림(2021:6), 이인희·고수형(2014) 등 참고하여 저자 작성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의 필요성 증대

- 최근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의 급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충당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관한 학계의 논의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한재명, 2016; 김학수 외, 2021)
 - 공공서비스 수요와 무관한 법정 전출금의 증대와 일률적인 '지방자치-교육자치 분리' 등에 의한 행정적, 제정적 비효율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제도 실태 분석을 통해 연계·협력의 실익을 모색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단기적 연계·협력 사무 발굴과 중·장기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02. 지방자치-교육자치 제도 현황과 연계·협력의 필요성

지방자치-교육자치 제도 현황

- 법적 연계·협력 실태
 - 「교육자치법」 상 사무의 위임 및 위탁시 협의를 거쳐야 하고, 부담적 조례안 및 의안을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임
 - 개별법상으로도 재정, 학교시설, 학교 급식, 학교 환경, 학교용지 조성 및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양 기관의 연계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음
- 제도적 연계·협력 실태

- 조직 및 인력 분야에 있어서 양 기관은 교육 연계·협력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 교류 제도(교육협력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음

- 「교육자치법」 상 의무사항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상 임의 기관인 '지방교육정책 협의회'가 존재함

• 재정적 연계·협력 실태

- 중앙 정부는 교부세 및 보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전출금 형식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시·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를 지원함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는 비법정이전수입과 교육경비보조 제도는 다른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치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법적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교육자치 분리에 따른 문제점

• 행정적 문제점

-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보건, 급식, 돌봄 등 지역 내 복지와 학교시설 및 환경 개선, 학교 신설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됨에 따라 지방자치와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동일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공공서비스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개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존재함에 따라 정책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분리 선출에 따라 예산의 정치적 배분으로 인해 교육사업의 필요성 보다는 주민에게 돋보이는 가시적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함

• 재정적 문제점

-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교육관련 주요 환경 변화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과 관련한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 문제가 발생함

- 지방세 수입 중 법정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방교육서비스에 배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지방 재정 경직성이 심화될 수 있음

• 언론보도 분석 결과

- 부정적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크게 교육재정, 교육감 선거제도, 도서관 운영, 학교시설(재개발 및 재건축 갈등,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등), 돌봄 관련 갈등 사례들이 추출되었음

사례 조사 결과

• 교육 사업 사례 조사

- 2022년 현재, 실제 교육청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한 곳을 선정하여 분리·운영하고 있는 교육 관련 사업 계획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우수 인재 양성, 학습 능력 향상 지원, 방과후 학교, 초등 돌봄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지원 등 두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존재함

- 농어촌 체험, 진로 체험, 역사 관련 프로그램 지원, 대회 개최 지원 및 예체능 분야, 학교 운동부 지원, 원어민 교사 지원 등 특별활동 및 진로 관련 사업 등이 연계·협력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교육과 청소년 및 기타 분야에서도 각 기관 간 연계·협력할 필요성이 도출되었음

• 연계·협력 우수 사례 조사

- 2021년, 2022년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우수 사례 수상 사업을 정리한 결과, 학교시설, 진로교육 및 체험, 학습 지원 교육복지, 장학 및 우수 인재 사업 분야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연계·협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교육 전문가 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식 조사 분석 결과

• 교육 전문가 협의회 결과

- 교육학 박사 학위 소유자 2명과 교육청 관계자(장학관, 연구관, 서기관 등) 5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전문가 협의회(focus group interview)를 개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교육자치 교육 전문가 협의회 논의 분석 결과 •

영역	내용
현행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현황과 장애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절화된 주체와 간막이식 운영으로 인한 교육 사업 연계·협력의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연계·협력 지원이 달라지는 한계 존재 교육 사업 연계·협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정책 일관성 추구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일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연계·협력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는 면 존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만 지원하고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연계·협력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장 의지 중요, 법률 개정 및 시스템 보완 필요 지방의회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연계·협력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 소멸 방지 목적과 교육 목적이 합치되는 경우(마을교육공동체, 농촌유학 등이 이러한 대표적 사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성 연계·협력 우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과 의지가 중요: 시흥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교육 사업 공개 및 공유 실질적인 인사 교류 필요: 경남통합교육추진단의 경우 교육 전문직인 장학사가 지자체 파견되어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연계·협력 필요하고 가능한 사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 학교 및 돌봄에서 지자체 연계, 평생교육 등 학업중단 청소년, 대안학교(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 대신) 학교시설 활용 부문 동학로 안전 정비와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 스쿨 버스 운영

• 교육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식조사

- 광역 지방자치단체 교육 담당 공무원(교육 담당 부서의 담당자: 과장, 팀장, 주무관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확보가 가능한 32명의 공무원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14명이 회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무원 인식조사 분석 결과 •

영역	공무원 인식조사 분석결과
현행 지방자치-교육자치 분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리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느낌
현행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정도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으로 연계·협력이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인사 교류와 지방 재정 분담은 연계·협력이 생각보다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이 주도적인 한편, 교육행정협의회의 경우 잘되는 편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협력의 장애 요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분리 선거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활성화 요인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음 연계·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고 인사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해야 하며 재정 분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교육 사업 수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사업 계획 - 집행 - 예산 부담 - 평가 및 환류 단계에서의 지자체 권한과 의무과 과종하다고 인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역할 분담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교육자치단체 역할이 더 강했다고 인식하여 앞으로는 균등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향후 연계·협력 필요하고 가능한 사업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협력 필요 및 가능 사업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초등 돌봄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지원 사업, 진로 체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 등

03.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가능 사무 제안

연계·협력 가능 사업 후보군 도출

- 조례에 근거한 지방교육행정협의 사무 분야와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유사·중복 교육사업과 연계·협력 우수 사례들을 추려 연계·협력이 가능한 사업 후보군을 도출함

• 연계·협력 가능 사업 후보군 도출 •

분야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규정	사례분석1 (실제 교육사업 분석)	사례분석1 (우수 사례 분석)
학교교육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 향상 과학기술교육진흥 학교체육진흥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우수 인재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능력향상지원 원어민 교사 지원 예체능 분야 우수 인재 양성 지역 우수 인재 양성 영재교육과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재단 설립 학부모 협의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공동 지원 학습 도우미 지원 장학 사업
교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설립, 폐지, 이설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육 유해 환경 시설 개선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 학교 용지 확보 등 교육 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옥외 환경개선 및 녹지량 확충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 조성 학교 교육 환경 시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주변 환경 협력 동학권 내 버스 노선 조정 동학로 정비 교통안전시설 확충
공공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마을 도서관 독서 관련 프로그램 지원 	-
학교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급식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쌀·농산물 급식 지원 	-
도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 등 수립 	-	-
교육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 학교 돌봄 프로그램 운영 돌봄교실 환경 개선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 교육과정 협력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 관련 교육 평생 학습관 운영지원 문자해독교육 운영 소외 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직업 및 진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교육 여건 개선 진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지원센터 공동운영 진로진학 상담 대학 연계 진로 교육
재난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안전 관리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체험 학교운동부 지원 예체능 분야 지원 및 대회 개최 지원 학교별 인문역사 분야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연계·협력 가능 분야 및 사업 제안

• 단기적 분야 및 사무 제안

- ① 학교 교육분야에서 우수 인재 양성 지원, 학습능력 향상 지원 등, ② 진로 교육 분야에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지원, ③ 교육환경 분야에서 동학로 정비, 동학원 버스 노선 조정, 지역지문과의 공동 시설 및 공간 조성 등, ④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및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을 연계·협력 할 경우 행정 및 재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정책 목적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중·장기적 분야 및 사무 제안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가 교육 사업의 계획-집행-평가 및 환류의 모든 단계에 공동 참여하고, 예산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함
- 중·장기적 사무로는 교육복지 분야, 평생교육 및 진로, 학교 교육, 교육 환경 분야를 들 수 있음

• 연계·협력 가능 사무 제안 •



• 중·장기적 사무 실천 방안

- 각 사업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중요한 개별 교육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 개별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집행, 환류까지 협조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사례) 경남 고성군 진로교육지원센터, 경기 안양 인재육성재단 설치 등
-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중간조직을 설치하여 교육 관련 사업 전반을 다루는 방식을 제안함(사례) 전북 교육협력추진단, 시흥 행복교육지원센터 등

출처 : 김 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알기쉬운 정책용어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친환경 보일러, 왜 사용해야 할까요?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연간)

지구를 지키고,
NO_x 배출량 약 87%
CO₂ 배출량 약 19% 저감

난방비도 아끼는 방법!
가스비 최대 44만 원 절감

※ 출처 : 친환경 보일러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및
경제적 편익 분석(한국환경산업기술원, '21.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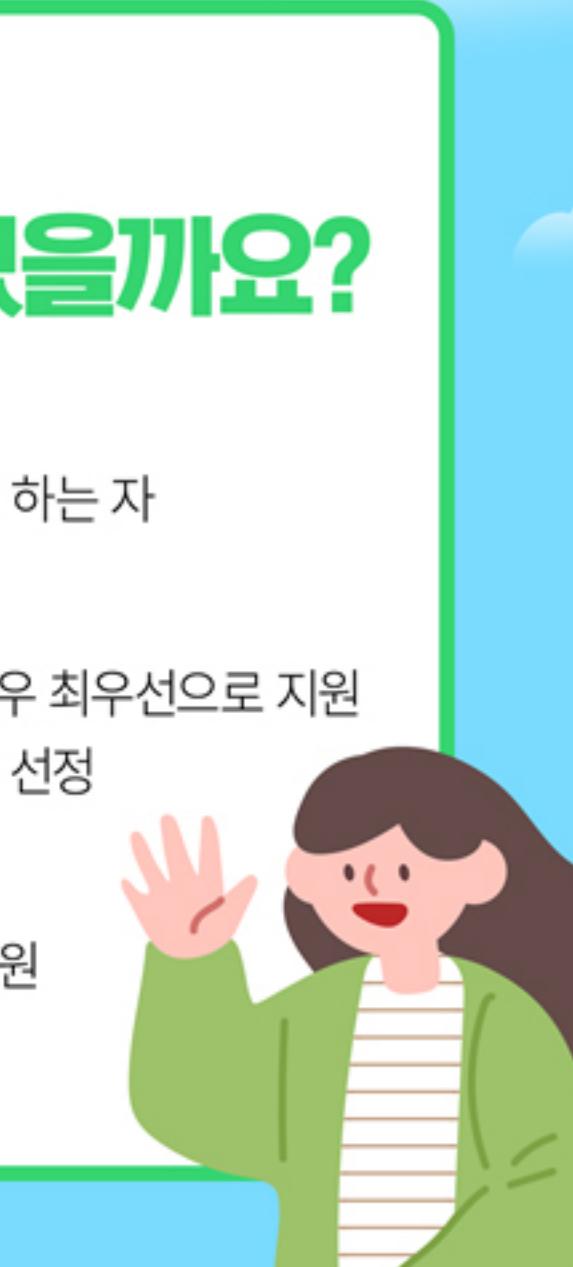


보조금,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 하는 자

지원 기준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
지자체 상황에 맞게 차순위 대상자 선정

지원 금액
일반 가정 10만 원, 저소득층 60만 원



알기쉬운 정책용어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방법은 일반 가정의 사후 신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단계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접속

주요 포털사이트에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검색

온라인 검색창에 www.greenproduct.go.kr/boiler 입력

홈페이지 바로가기

A screenshot of the 'Boiler Certification System' website is shown, featuring a banner about energy-saving boilers and various service icons.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단계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 보일러 교체 영수증도 꼭 쟁겨주세요!
- 홈페이지 필수 서류 이외에, 지자체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screenshot of the 'Boiler Certification System' website's application form page is shown, highlighting sections for signature and receipt of documents.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알기쉬운 정책용어

